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64
----------	-----------

제출일자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일상 생활에서의 현실적인 지원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
- 주민공동이용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

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

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 도서관, 농업 박물관
- 공원, 놀이터, 주민운동장(운동시설 포함)
-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 비영업용으로 관리·운영하는 공동 목욕장, 공동 취사장, 공동 세탁장, 공동 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만, 오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되어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7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나. 예산조치 : '15년도 예산 1,571백만원 기 확보(건설과)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건설과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6. 15. ~ 7. 0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1. 도서관, 농업 박물관
2. 공원, 놀이터, 주민운동장(운동시설 포함)
3.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4. 비영업용으로 관리·운영하는 공동 목욕장, 공동 취사장, 공동 세탁장, 공동 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만,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건축물 및 시설물 조성 등
-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제4조(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 및 시설물.
 1. 도서관, 농업박물관 / 2. 공원, 놀이터, 주민운동장(운동시설 포함)
 3.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4. 비영업용으로 관리·운영하는 공동 목욕장, 공동 취사장, 공동 세탁장, 공동 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다만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야 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세출	국비	477	625	1100	700	598	3,500
	도비	61	80	141	90	78	450
	군비	143	188	330	210	179	1,050
	소계(a)	681	893	1,571	1,000	855	5,000
세입	국비	477	625	1100	700	598	3,500
	도비	61	80	141	90	78	450
	소계(b)	538	705	1,241	790	676	3,950
총비용(a-b)		143	188	330	210	179	1,050

※ 건설과 권역단위정비사업에 예산 편성 및 집행

3. 관련 의견

-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일상 생활에서의 현실적인 지원제도 장치를 마련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경 기